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 914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9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추진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정비
 - 영 제123조 직접사용의 범위를 주택까지 포함하여 적용 반영
 - 법 제183조제2항 지방세 감면 결정 및 통지 문구 삭제 반영

2. 주요내용

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 기관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(안 제4조의2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하여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변경(안 제11조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 반영하여 ‘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’ 및 ‘그 결과 통지’ 문구 변경(안 제13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세무1과장, 전화: 02-3396-5105, FAX: 02-3396-8699, E-mail: lyh05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

제11조 중 “건축물” 을 “건축물 및 주택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감면 여부를 조사·결정하고 그 내용” 을 “구세 감면 관련 사항” 으로, “신청인에게 통지” 를 “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(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에게 안내” 로 한다.

별지 서식 전부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2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4조의2(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) 「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</u>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<u>직접 사용하는 건축물</u>에 대해서는 <u>재산세를 면제한다.</u></p>
<p>제11조(직접사용의 의미)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<u>직접사용의 범위</u>에는 해당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할 <u>건축물</u>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</p>	<p>제11조(직접사용의 의미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건축물</u> 및 <u>주택</u>-----.</p>
<p>제13조(감면신청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<u>감면여부를 조사 · 결정</u> 하고 <u>그 내용</u>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<u>신청인에게 통지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감면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u>구세 감면 관련 사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(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</u>에게 <u>안내</u>-----.</p>